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083
----------	------

발의연월일 : 2017. 1. 13.

발의자 : 윤영일 · 신용현 · 위성곤  
정재호 · 조배숙 · 김종회  
김삼화 · 정인화 · 전혜숙  
황주홍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양한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해 다량의 수산물 수입이 예상되면서 우리나라 수산물의 경쟁력 향상이 요구되고 있음. 또한 소비자들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수요가 상승하면서 상하기 쉬운 수산물의 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국내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수산물이 거쳐가는 수산물산지 위판장의 경우 위생관리기준이 없어 위생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수산물의 신속한 거래를 위한 전자경매 시스템이나 위생을 위한 저온 유통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현대화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판장의 위생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판장의 현대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위판장개설자에게 지원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3

조의3 및 제22조의2 신설).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4348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위판장 위생관리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위생관리를 통한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하여 위판장의 위생시설 확보 및 적정 온도 유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위판장 위생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제1항 중 “설치 및 현대화를”을 “설치를”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위판장의 현대화 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위판장 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위판장의 수산물전자거래(전자경매를 포함한다) 확대, 위판장의 저온유통체계 확립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위판장개설자에게 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라 위판장 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지원계획에 따른 지원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지원계획의 내용 및 지원실적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법률 제14348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u>&lt;신 설&gt;</u></p> <p>제22조(위판장의 개수·보수 등 지 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는 산지의 수산물 공동출하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판장 개설자에게 부지 확보, 시설물 설치 및 현대화를 위한 개수· 보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u>&lt;신 설&gt;</u></p>	<p>법률 제14348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u>제13조의3(위판장 위생관리기준)</u> <u>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위 생관리를 통한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하여 위판장의 위생 시설 확보 및 적정 온도 유지 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위판장 위생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한 다.</u></p> <p>제22조(위판장의 개수·보수 등 지 원) ① ----- ----- ----- ----- <u>설치를----- -----.</u></p> <p>② (현행과 같음)</p> <p><u>제22조의2(위판장의 현대화 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는 위판장 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위판장의 수산물전자거</u></p>

래(전자경매를 포함한다) 확대,  
위판장의 저온유통체계 확립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원계획  
을 세워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위판장개설자에게 제1항의 지  
원계획에 따라 위판장 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지원계획에 따른 지원실  
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지원계획의 내용 및 지원실  
적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